

[서식 예] 답변서 [보증채무금 청구에서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3 (주채무 감축의 항변)]

답 변 서

사 건 2000가단0000 보증채무금

원 고 ○○○

피 고 〈〉〉〉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김◉◉에게 금 XXX원을 빌려주는 차용금 계약을 하였고,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소외 김◉◉사이의 위 차용금 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김◉◉이 차용금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
- 2. 소외 김◉◉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,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.
- 3. 한편 주채무자인 소외 김◉◉은 위 차용금 계약 이후인 20○○. △. △. 원고에게 A브랜드 노트북 컴퓨터 30대를 YYY원에 매도하였는데, 같은 날 위 소외 김◉◉은



원고에게 위 노트북 컴퓨터를 모두 인도하였고, 물품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소외 김⑥⑥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노트북 컴퓨터 대금 상당액 YYY원에서 위 차용금 채무액 XXX원을 상계한 후 나머지 ZZZ원(= 노트북 대금 YYY원 - 차용금 XXX원)만을 노트북 컴퓨터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.

- 4.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 김◉◉사이의 노트북 컴퓨터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주채무인 차용금 계약의 채무는 상계되었는바, 피고는 위 상계로 감축된 범위에 서는 주채무자 김◉◉의 원고에 대한 상계를 원용하여 이 범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

진술서(소외 김●●)

1. 을 제2호증

A브랜드 노트북 컴퓨터 매매계약서 사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답변서 부본

1통

20○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
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
제출부수	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답변서의 제 출	·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
	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
	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). 법원은 피고
	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
	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할
	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
	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.
	·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
	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).
기 타	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,
	·청구취지 :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
	·청구원인 :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
	분,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,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
	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.
	·민법 제434조(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)
	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	·주의할 대법원 판결례로서,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
	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
	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
	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
	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
	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(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
	카1340 판결)이 있음.
	/[1040 전설/기 从市.